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6.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6. 15

다. 상 정 일 자 : 2005. 7. 4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나. 제안사유

- 재난·재해에 관한 소관부서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으로써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담당자 변경
 - 기존 자문단의 간사(건설과장)와 서기(재난방재담당)가 각각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재난관리담당으로 변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석호)

- 행정기구 개편에 의하여 기존 건설과에서 관장하던 업무 일부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담당 부서장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로서 당연 개정 사항임.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임 :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건설과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재난방재담당”은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u>건설과장</u>이 되고 서기는 <u>재난방재담당</u>이 된다.</p>	<p>제12조(간사와 서기)..... <u>재난안전관리과장</u>..... <u>재난관리담당</u>.....</p>